

2019년 대구지역 R&D지원기관 연구장비 활용 지원 사업 공고

지역 기업의 R&D활력 제고를 위해 「2019년 대구지역 R&D
지원기관 연구장비 활용 지원 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9. 7. 11

대 구 상 공 회 의 소 회 장

1. 지원목적 : 지역 R&D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장비 활용 ·
지원을 통해 기업 R&D 활성화 기여
2. 지원대상 : 대구광역시 내 사업장을 둔 『중소기업기본법』 상 중소기업
3. 지원규모 : 기업당 1백만원 이내 (시간/횟수에 제한 없음)

※ 장비 사용료의 80%지원 (부가세 미포함)

예시1) A분석 장비 사용시 (사용료 : 125만원) => (지원금:100만원, 기업자부담 25만원)

예시2) B시험 장비 사용시 (사용료 : 20만원) => (지원금:16만원, 기업자부담 4만원)

☞ 예시2.에서 지원금 잔액 84만원은 사업 기간 내 추가 사용 가능함

(※ 단, 전체 사업비 소진 시 지원 종료됨)

4. 신청기간 : 신청 접수 순 지원비 승인 후 전체사업비 소진 시까지
5. 지원내용 : 연구 장비 사용에 따른 비용 지원 (단, 대구 소재 기관에 한함)
6. 신청절차

○ 온라인 접수

- 대구상의 홈페이지 (www.dcci.or.kr) > 공지사항 : 공고

☞ 첨부 파일 다운로드 작성 후

[온라인 폼 신청] <http://naver.me/F4efmGU3>

※ 유의사항 : 신청 접수순 지원비 승인 후 전체사업비 소진 시 자동 접수 마감됨.

7. 지원절차

- ① [신청기업 → 대구상의] 장비이용 기관에 장비문의 및 사용 일정 결정 후 지원 사업 신청
- ② [대구상의 → 신청기업] 장비 이용계획 등 심사를 통해 실시 승인
- ③ [신청기업 → R&D기관] R&D장비이용 후 이용 기관에 사용료 선납 (100%)
※ 장비 이용기간 : 승인일 ~ 2019. 11. 30 까지
- ④ [신청기업 → 대구상의] 장비 이용에 관한 비용지출 증빙서류 (장비 이용 확인서[별첨-01 양식], 장비 이용 세금계산서[기관발급], 사업자 명의 통장사본) 제출
- ⑤ [대구상의 → 신청기업] 증빙서류 검토 후 15일 내 지원금 환급 (사용료 80%)

8. 기타사항

- ※ 국가(지자체 등)에서 실시하는 『R&D장비 관련 지원사업』에 대한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.
- ※ R&D 연구기관 장비 이용 시, 지원 사업 관계자 현장방문·확인이 이루어 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□ 참고사항

-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.

□ 문의처

- 대구상공회의소 R&D지원팀
 - 담 당 : 김명은 연구원 (☎ : 053-222-3086, FAX : 053-222-3100)
 - 주 소 :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57 (6층)

※ 공고된 사업에 대해 업무처리방법, 사업내용 및 비용은 대구상의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.

※ 보조금 부정 수급 시 지원예산은 환수조치 하며, 관련자는 민·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< 지원 제한 기업 >

- 전국은행연합회의 “신용정보관리규약”에 따라 연체, 대위변제·대지급, 부도, 관련인, 금융질서문란, 화의·법정관리·기업회생신청·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
-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신청하거나 사업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기업
-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
- 거래소 및 코스닥 상장기업
- 중앙부처 및 지자체 정책자금을 최근 5년간 100억원 초과한 기업
- 당해연도 사업에 대하여 타 정책자금 지원받은 기업
- 사업 수혜 받은 후 사업완료보고서 미 제출기업 신청 제한(1년간)
- 국세, 지방세, 4대 보험료 등 체납업체
- 기타 사업 주관기관에서 정한 규정에 의해 지원 어렵다고 판단되는 업체

붙임

1. 사업 공고문 1부
2. (신청서양식-01) R&D장비 활용 지원 사업 신청서 1부
3. (신청서양식-02-별첨) R&D장비 활용 계획서 1부
4. (신청서양식-02-별첨-01) R&D장비 이용 확인서 1부
5. (필수양식-03) 신청기업 참여의사 확인 및 개인정보 이용 제공 동의서 1부
6. (필수양식-04) 중복 지원 금지 및 지원금 반납 협약서 1부. 끝.

